

이라크 자유작전 관련 법률문제 검토



육군대령 조 동 양
합참 법무실장

I. 서설

미국 과 영국의 동맹군이 2003년 3월 20일 오전5시30분 (이라크 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의 주요시설과 쿠웨이트 접경의 이라크군 기지 등을 공습함으로써 ‘이라크 자유작전(Operation Iraqi Freedom)’ 이라고 명명된 이라크와의 전쟁을 개시하였다.

이에 앞서 부시 미국 대통령은 대이라크 전쟁 개시 이틀 전인 같은 달 1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노력, 주변국에 대한 침략행

위, 알 카에다 등 테러단체 지원, 국제사회의 무장해제 요구 거부 등을 이라크 공격의 이유로 밝혔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과거 안보전략의 근간이었던 억제정책을 폐기하고,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적대국 및 테러조직에 대해 선제공격도 불사하는, 힘에 기초한 적극적·공세적 안보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이라크 자유작전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우려 및 테러단체와의 연계 가능성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 공격을 단행한 것으로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변화에 의한 예방적 군사조치를 처음으로 실행

에 옮긴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라는 전쟁명분 획득 과정을 생략한 채 군사행동을 감행함으로써 전세계의 여론은 이번 전쟁이 정당성을 결여한 명분없는 전쟁이라며 반전으로 들끓은 바 있다.

이러한 세계적 비난 여론을 감수하면서 미국이 이번 전쟁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대량살상무기를 유포할 위험이 큰 사담 후세인 정권의 해체이지만, 표면적 이유와는 달리 진짜 목적은 석유라는 분석도 유력하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번 전쟁에 대해 찬반 양론으로 나누어 졌다.

한편 우리 정부는 극렬한 찬반논쟁 속에서 국익을 고려하여 675명의 공병 및 의료 지원부대를 파병하였다. 미·영 동맹군의 이라크 자유작전은 필연적으로 전쟁의 적법성 여부를 비롯한 많은 국제법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이번 전쟁의 개시, 진행, 종결 과정에서 파생된 제반 법적 문제들을 검토하여 정리해 보는 것도 실전적 전투준비 차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II. 이라크 자유작전의 적법성 문제

1. 국제법상 적법한 무력사용

오늘날 가장 공식적인 법원(法源)으로 자리잡은 유엔헌장은 제2조 제4항에서 무력사용금지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동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동헌장 제39조, 제42조에 의하여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 군사적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무력사용이 가능하다.

동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의 발동요건을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if an armed attack occurs)”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해석과 관련하여 무력공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공격의 우려가 명백하고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러한 자위권을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ce) 또는 선제적 자위권(preemptive self-defence)이라 하며 이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긍정설¹⁾과 부정설²⁾로 나뉘고 있다.

작금의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핵무기

1)Bowett, Waldock, McDougal, Goodrich, Friedmann, O'Connell 등의 학자가 긍정설을 취하고 있으며, 예방적 자위권을 부정하면 최초의 공격대상이 되는 국가에 심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2)Jessup, Brownlie, Henkin, Kunz, Kelsen, Schachter, Nincic 등의 학자가 부정설을 취하고 있으며, 예방적 자위권을 인정하게 되면 예방전쟁을 시인하여 무력행사에 대한 통제가 곤란해 진다는 것을 그 논거로 든다.

등 대량살상무기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안보상 필요에 의해 선제적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예방적 자위의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1962년의 미국에 의한 쿠바 봉쇄시 예방적 자위권이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필요성과 비례성의 관점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2. 미국 정부의 주장

미국 정부는 이라크 공격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분명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밝힌 적은 없으나, 관계자들의 각종 언급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직접 또는 테러조직을 통하여 미국 및 서방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선제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대하여 무력사용을 허용한 1990년 11월 29일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678호와 이라크의 생화학무기 폐기를 비롯한 군비축소 의무를 부과한 1991년 4월 3일의 동결의안 제687호 및 이라크 내에서의 사찰, 군축, 테러리즘의 폐기의무를 부과한 2002년 11월8일의

동결의안 제1441호를 종합하여 이번 이라크 공격을 합법화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원용하고 있다.

3. 적법론과 위법론

적법론은 동결의안 제678호와 제687호는 불이행시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동결의안 제1441호는 위반시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하였으며, 위 결의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후속결의가 없으면 시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지속되므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적법하다는 것³⁾으로 국내 국제법학계의 소수의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반전의 물결은 전쟁 자체를 반대한 것이지 미국에 의한 군사행동의 적법성에 대한 시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 반면에 다수의견인 위법론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동결의안 제678호는 다국적군이 1991년 이라크 공격을 감행하여 쿠웨이트 영토를 회복한 것으로 그 효력은 종료되었고, 동결의안 제687호와 제1441호는 연속적인 것으로서 경고의 의미를 가질 뿐 직접적 무력사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다.⁴⁾

3)김찬규, “대이라크 군사행동의 적법성”(대한변협신문 제78호 : 03.4.1.) 참고

4)김석현,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의 위기”, 15면

올해 초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승인하는 두 번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위해 외교적 총력전을 폈으나 다수표 확보의 실패로 포기한 제반 정황을 감안하면 과거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적법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⁵⁾

그리고 이라크의 미국에 대한 무력공격 위협이 현존하고도 급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무력행사는 장래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점에서 예방적 자위가 아니라 예방전쟁(preventive war)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⁶⁾ 나아가 이라크 전쟁을 침략전쟁이라고 결론짓는 견해도 있다.⁷⁾

Ⅲ. 한국군의 파병문제

이라크전쟁이 발발한 직후 우리 정부는 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을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했다. 파병동의안은 두 차례의 연기를 거쳐 논란을 거듭한 끝에 지난 4월 2일 국회에서 찬성 179표, 반대 68표, 기권 2표로 통과되었다. 파병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

어지기도 했으며, 국회의 파병동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는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한국에 대해 조약당사자로서 당연히 파병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파병문제는 정책적 판단에서 결정될 사안이라 할 것이다.

이라크전 파병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은 “명분보다는 국익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파병이유를 설명했다. 이라크전 파병 논란에서 찬성론자들은 대체로 전략적·경제적·현실적 논리를 제기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법적·도덕적·명분론적 측면을 강조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이라크전 파병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라크 파병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5조 제1항의 위반 여부이다. 결국 이 문제는 이라크 전쟁의 적법성 여부로서 귀결된다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적법론과 위법론이 대립

5)백진현, “이라크 전쟁과 한국 : 국내법적 측면”, 3면

6)김부찬, “대이라크전에 있어서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 8면

7)박찬운, “이라크전쟁, 이론의 여지없는 국제법 위반의 침략전쟁이다”(대한변협신문 제79호 : 03.4.15) 참고

되어 있으나, 유권해석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유엔 등의 결정이 없는 현상에서는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단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파병되는 공병·의료부대의 성격이 평화유지 내지 평화구축과 관련이 있는 것도 파병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IV. 인간방패 및 문화재 방패 문제

1. 인간방패의 위법성

세계적으로 반전여론이 고조되면서 일부 반전주의자들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 수행에 차질을 주기 위해 자진하여 주요 군사목표물에 소위 인간방패(human shield)로 지원한 바 있으며, 이라크 정부도 자국 및 타국의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활용하려는 계획 하에 대공진지 등 군사시설을 민간인 주거지역으로 이동시켰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현대전이 민간주민에게 더욱 큰 피해를 입히게 됨에 따라 1977년에 채택된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는 공격으로부터 민간 주민 및 민간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충돌 당사국은 자국의 지배 하에 있는 민간주민, 개개의 민간인 및 민간물자를 군사목표 가까운 곳에서 이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군사목표를 인구 밀집지역 내에 또는 그 근처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의정서 제58조).

그러므로 군 지휘관은 민간인들을 군사목표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민간인들을 군사목표물의 방패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전쟁법⁸⁾ 위반이라 할 것이다.

이라크가 인간방패를 이용하여 전쟁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미·영 동맹군의 민간인 보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간방패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가급적 피해야 하고, 부득이 군사목표를 공격하는 경우에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2. 문화재 방패의 위법성

이라크 전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라크는 자국에 소재한 문화재 주변

8) '전쟁법'이라 함은 무력충돌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5호)를 말하는데, 군인은 전쟁법을 준수하여야 하며(동규율 제10조의2 제1항) 지휘관은 예하 장병들에게 전쟁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시킬 책무가 있다(동조 제2항).

에 군사목표물을 이동시켜 문화재를 방패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라크에는 메소포타미아 인류문명 발상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고대 문명의 유적이 산재한 문명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재를 군사목표물의 방패로 사용한다면, 동맹군의 공격은 문화재 파괴에 따른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찍이 육전에 관한 헤이그협약 제27조에 종교, 예술, 학술 및 자선용의 건물과 역사상의 기념건조물 등이 군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전투의 직접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들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항공기 및 장거리 미사일 등이 발달한 현대전에서 이 규정만으로는 문화재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어렵게 되어 1954년 5월 유네스코 주최에 의한 정부간 회의에서 ‘무력충돌에서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또한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에서는 “국민의 문화재 또는 정신적 유산을 구성하는 역사적 기념물, 예술작품 혹은 예배장소에 대하여 행해지는 모든 적대행위 및 그러한 대상물을 군사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제53조)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군사목표물의 방패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전쟁법 위반이 된다.

V. 대량살상무기 사용 문제

1. 전쟁법의 일반원칙

대량살상무기라 함은 파괴력과 살상력이 극심하고 또한 사용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무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화학무기, 세균(생물학)무기 및 핵무기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오늘날 대량살상무기를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조약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화학무기 및 생물학적 무기의 규제에 관한 조약은 성립되어 있다. 핵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은 아직 체결되어 있지 않고 사용의 위법성에 관해서도 위법성, 적법성, 절충설 등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핵무기는 그 사용으로 인한 비극을 고려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⁹⁾

화학무기의 사용금지를 위해 헤이그 가스선언(1899년), 제네바 의정서(1925년) 등이 채택되었으나 단점이 발견되었고, 1993년에 이르러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 및 사용의 금지와 보유 중에 있는 화학무기 및 생산시설의 폐기에 관한 협약(CWC)’이 채택되어 화학무기의 포괄적 금

9) 정운장, ‘국제인도법’ (영남대 출판부, 1994), 290~291면

지가 가능해 졌다. 그리고 생물학적 무기의 사용금지를 위해서는 1972년에 '세균학적 무기(생물학적 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BWC)'이 채택되었다.

2. 대량살상무기 사용의 위법성

이라크는 핵무기 비확산조약 및 독가스 금지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의 가입국이고 BWC의 성명국이므로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 이른바 WMD를 사용할 경우 전쟁법을 위반하게 되어 관련자들은 전범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라크의 WMD 보유, 사용 사실이 입증되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국의 대 이라크전의 적법성을 강화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라크가 설사 WMD를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VI. 포로 관련 문제

1. 민간인 복장 또는 미군 복장을 착용한 이라크 군인에 대한 포로 인정

가. 적법한 전시위계(偽計) - 기계(奇計) 시의 고금과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전쟁에는 적을 기만하고 오도하기 위한 술책이 사용돼 왔다. 이러한 술책을 일반적으로 전시위계라 한다. 전시위계에는 기계와 배신행위가 포함된다. 기계(ruses of war)는 진실을 고해야 할 의무가 없는 위계로서 적법한 행위로 인정된다(육전에 관한 헤이그 협약 제24조). 예컨대 복병의 배치, 위장, 양동작전, 허위정보의 유포 또는 적신호의 역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위법한 배신행위

배신행위(perfidy)는 진실을 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 또는 전투상의 신뢰감을 배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법행위이다(동협약 제23조 b). 예컨대 적국 또는 적군에 속하는 자를 배신적 방법으로 살해(암살)하거나 또는 군사기(軍使旗), 국기 및 군용표장·적십자표장의 부정한 사용, 혹은 전투원이 적국의 군복을 착용하여 교전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 민간복장 또는 적군복장 착용자에 대한 처벌
이라크 군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민간인 복장을 하거나 미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미군복장을 착용하는 경우는 명백하게 위법한 배신행위로 전쟁법 위반에 해당되며, 교전자 자격¹⁰⁾을 갖추지

10) 포로로 대우받기 위해서는 포로로서의 자격, 즉 교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 요건은 첫째 부하를 위하여 책임을 지는 책임자가 있을 것, 둘째 멀리서부터 식별할 수 있는 고착된 식별휘장을 가질 것, 셋째 무기를 공공연하게 휴대할 것, 넷째 전쟁의 법규 및 관례를 준수할 것 등이다.

못하여 포로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간첩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한반도에서 유사시 북한의 특작부대원이 민간복장이나 아군 복장을 착용하고 침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라크 정규군이 아닌 비정규 군인이 미군 복장을 착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자국군 제복을 착용하지 못하여 민간복장 그대로인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전시에 정부가 민간주민을 소집하여 조직한 단체인 민병대(militia)와 민간주민이 정부의 특별허가를 얻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인 의용대(volunteer corps)는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멀리서 식별할 수 있는 고착된 식별휘장을 갖추고 무기를 공공연하게 휴대하면 교전자로 인정되어 포로로 취급될 수 있다. 그리고 미점령 지역의 급박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무기를 들고 적군에 대항하는 민간주민 집단인 군민병(levée en masse)은 무기를 공공연하게 휴대하는 것으로 교전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2. 이라크에 의한 미군 포로 TV 공개

이라크 정부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4일 미군 포로 5명이 공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이라크 TV 방송의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을 방영했다. 그뿐 아니라 최소 5명의

미군 시신이 시커멓게 타고 핏자국이 낭자한 상태로 임시 시체안치소에 널브러져 있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들이 시체를 총 등으로 찌르거나 굴리는 모습과 완전 군장을 한 상태로 헬멧까지 쓴 병사의 시신이 고속도로가에 누워 있는 모습도 방영했다.

제네바 제3협약-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1949.8.12.) 제13조에는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 그 억류 하에 있는 포로를 사망케 하거나 그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여하한 억류국의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도 금지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본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또한 포로는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 정부가 정치적인 의도 하에 미군 포로들의 모습을 TV에 방영하게 하여 심리전으로 이용하는 것은 동협약 제3조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군 전사자들의 모습을 TV에 방영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또는 취재의 자유에 해당하여 전쟁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VII. 전후 처리문제

1. 종전선언의 법적 효력

일반적으로 전쟁은 강화조약, 교전국 쌍방의 적대행위 중지 및 전쟁의사 포기, 정복에 의해 종료되며 전쟁종결의 일방적 선

언을 포함하기도 한다.¹¹⁾

이미 이라크에서의 전투는 종료되었으며 부시 미국 대통령도 지난 5월 1일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상에서 사실상 종전을 발표하였으나,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언하지는 아니하였다.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면 적대행위가 중지되어 평화관계가 회복되며 당사국간의 권리의무는 원상회복된다. 따라서 양 당사국이 포획한 포로는 석방되어야 하며, 외교관계도 재개된다. 한편 군정은 일국이 타국 영토의 일부를 점령했을 때부터 실시할 수 있고, 전쟁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군정을 실시할 수 있다.

2. 미국의 이라크 군정 실시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¹²⁾함에 따라 미국은 점령자로서 점령지인 이라크의 공공질서 및 생활을 회복하기 위하여 군정을 실시할 수 있다. 미국의 군정은 이라크내 치안확립과 후세인 정권의 잔여세력 척결, 전쟁과정에서 파괴된 각종시설 복구 및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 점령자는 점령지의 질서유지와

군사상의 필요에 절대적인 지장이 없는 한 피점령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므로(육전에 관한 헤이그 협약 제43조), 새로운 입법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점령에 절대적인 지장이 없는 한 종래의 행정기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세, 부과금 및 통관세를 징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점령지 주민은 군정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나, 군정기관은 주민의 생명·명예, 종교·신앙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동협약 제46조). 국유재산 중 군사행동에 사용될 수 있는 동산만 몰수할 수 있으나(동협약 제53조 제1항), 사유재산은 동산·부동산을 막론하고 몰수할 수 없다(동협약 제46조 제2항). 미국은 이라크 재건과 인도적 원조 위원회(ORHA)를 통해 일정기간 군정을 실시한 다음, 이라크 과도정부를 수립하고 제헌의회를 구성하여 국민투표 실시 및 신정부 수립의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3. 이라크 석유개발 사업권의 향방

유엔은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안보리 결의안 제661호를 의결하여

11)김명기, '국제법원론' (박영사, 1997), 1443면

12)점령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복이 있는데, 점령은 단순히 영역의 잠정적 지배에 불과하나 정복은 영토 취득의 효과를 가져온다. 18세기 이전에는 점령이 곧 정복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일방교전당사국이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점령에 영토취득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양자는 구별된다.

이라크에 대한 무역제재를 가하였다. 그 후 유엔 안보리는 이라크가 석유를 수출하여 식량 및 의료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1995년 결의안 제986호로 유엔 감독 하에 제한된 이라크 석유 판매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런데 이라크를 점령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가 이라크 전후 복구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석유수출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유엔의 이라크 제재를 해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영국, 스페인 등과 지난 5월 22일 이라크 제재 해제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였고,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제1483호로 통과시켰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통과로 이라크에 합법적인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미·영 동맹국은 이라크 석유수입처분 점령국으로서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 발발 후 유엔이 단독으로 관리해왔던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6개월 후에 폐지되게 되었다.

비록 미·영 동맹국의 통치 하에 이라크의 원유수출이 재개되더라도 기존의 이라크 유전개발사업권에 대한 처리가 문제될 것이다. 이라크 석유개발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은 후세인 정권과 체결한 석유개발 계약들이 국제법적으로 유효하며, 자국의 권리가 침해되면 국제소송 및 중재를 불사한다는 강경방침

을 천명하였다.

미·영 동맹국 또는 이라크 과도정부가 이들이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석유개발사업에서 이들을 배제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4. 전범재판 문제

과거 후세인 정권이 이란과 쿠르드족에 화학무기를 사용한 행위 및 쿠웨이트 침공시 자행한 비인도적 행위에 관련된 자들 및 이번 이라크 전쟁 시에 전쟁법을 위반하여 비인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한 자들은 전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전범재판을 하는 일반적 형식으로는 첫째 패전국(이라크)에 전범 법정을 세우는 방법, 둘째 승전국(미국)의 법원에서 다루는 방법, 셋째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다루는 방법, 넷째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 관련 전범재판소를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이라크 신정부 수립 후 전범재판을 주도하게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VIII. 결론

걸프전 때와는 달리 이번 이라크전에서 미국은, 여하한 이라크의 무력행사도 없고 이라크가 9·11테러와 관련되었다는 결정

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유엔 무기 사찰단이 이라크에서 생화학무기의 존재를 찾아내지도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유엔 결의도 없이 전쟁을 개시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반전여론에 곤혹을 치렀다.

또한 미국의 다음 공격목표가 “악의 축”, “불량국가”, “불법국가”로 지칭된 북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가 문제될 수 밖에 없어, 우리나라도 이라크전에 국군을 파병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나라 전체가 찬·반 양론으로 갈라지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혼란과 갈등은 결국 이라크 전쟁의 적법성과 관련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의 이라크전을 승인하는 직접적인 결의안이 없는 현실에서 미국의 제반 주장은 논거가 박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고한 한·미 동맹관계가 긴요한 우리나라

의 입장에서는 국익을 고려하여 미국의 이라크전을 지지하고, 국군을 파병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 정부의 주장이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투상황은 실시간에 전세계로 생중계되므로 전쟁 당사국이 전쟁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 전쟁법을 위반하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한다면, 곧바로 비난여론에 직면하여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 군도 전쟁법 분야에 배전의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는 전쟁법 교육에, 전시에는 전쟁법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